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22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민관

2. B

3. C

4. D

5. E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려 담당변호사 한상열

변론 종결 2021. 10. 7.

판결 선고 2021. 11. 25.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F과 피고 A 사이에 2020. 4.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F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4. 3. 접수 제77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과 피고 B 사이에 2019.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F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1. 22. 접수 제247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와 피고 C 사이에 2019.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F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1. 22. 접수 제247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F와 피고 D, E 사이에 2019. 10.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E는 F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10. 2. 접수 제33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C,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4항 및 F와 피고 E 사이에 별지5 목록 기재 선박 중 공유자 지분 10분의 9(이하 '이
사건 선박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46,685,2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46,685,2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5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6. 12.부터 2016. 6. 10.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1,4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20. 6. 5.까지로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7. 6. 2. G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6. 2.부터 2018. 6. 1.까지, 채권자 H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3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20. 5. 29.까지로 되었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던 무렵 그 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F의 처분행위

- 1) F은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 피고 D, E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E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2) F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피고 B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3) F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피고 C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4) F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3. 피고 A과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1) 내지 4)항 각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5) 한편, F은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하여, 2020. 3. 31. 피고 E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G이 2020. 5.경 만기 도래한 대출금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중소기업은행과 H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20. 6. 19.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1,480,000,000원, 이자 25,244,998원, 합계 1,505,244,998원을, 2020. 7. 8. H은행에게 원금 319,973,262원, 이자 2,798,611원, 합계 322,771,87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에게 대위변제금 1,828,016,871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505,244,998원 + H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322,771,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권리(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과 그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G이 2019. 10.경 이미 중소기업은행, H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G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 G와 연대보증인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경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G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권 등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라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J조합, K조합, L조합, M조합,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통영세무서, 통영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Q,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0. 2.경부터 2020. 4. 3.경까지 F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13,815,375,440원인 반면, F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9. 10. 2. 기준으로 총 16,023,856,545원에 달하였으며 그 후로도 계속 증가하여 2020. 4. 3.에는 총 17,351,498,935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F이 피고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 등을 목적으로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표1]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034,800,000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84,868,000
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26,160,000(1)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AG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0원으로 확인되나, 위 부동산에 관한 종전 거래 내용과 부동산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위 부동산의 가액을 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감정평가서(갑 제21호증)에서 위 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이 소재한 영향을 감안하여 산정한 26,16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0,725,850,000
5	통영시 S맨션 T호	115,000,000
6	통영시 U리(이하 'U리'라고 한다) V답 1,283 m ²	19,245,000
7	W답 632m ²	9,480,000
8	X 전 396m ²	23,322,000
9	Y 전 268m ²	18,486,000
10	Z 전 601m ²	9,015,000
11	AA 임야 13,488 m ²	9,171,840(2)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9,171,840원(= 202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680원 × 13,488m ²)을 가액으로 인정한다.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034,800,000
12	이 사건 선박 지분	1,064,235,600
13	통영시 동력선 AB(80톤)	675,742,000
합계액	13,815,375,440	

[표2]3)

1	J조합	자립대출채무	38,977,539
2	국가(관리청: 통영세무서장)	조세채무	420,422,950
3	Q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
4	N(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3,025,465
5	(주)AC	대출채무	7,000,000
6	(주)AD	대출채무	6,666,000
7	(주)AE	보증채무	90,000,000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채무	4,160,000
9	AF(주)	보증채무	35,756,000
10	P(주)	대출채무	109,018,070
11	원고	구상채무(중소기업은행 관련)	1,505,244,998
12	원고	구상채무(H은행 관련)	322,771,873
13	J조합	2018. 7. 2.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
14	J조합	2018. 7. 10.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00,000
15	M조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000,000
16	통영시(소관: 세무과)	조세채무	49,537,020
17	L조합	대출채무	2,787,800,000
18	(주)I	2018. 4. 2.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60,000,000
19	(주)I	2019. 1. 25.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800,000,000
20	통영시(소관: 세무과)	2019. 7. 1.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3,764,080
21	통영시(소관: 세무과)	2019. 8. 5.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212,550
22	K조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0,000,000
23	R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0
24	피고 D	대여금채무	1,109,500,000
25	피고 E	대여금채무	700,000,000
합계액	16,023,856,545		

1	J조합	자립대출채무	39,996,626
2	J조합	외상매출금채무	2,937,310
3	국가(관리청: 통영세무서장)	조세채무	1,832,119,500
4	Q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
5	N(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8,693,978
6	(주)AD	대출채무	2,666,000
7	(주)AE	보증채무	84,000,000
8	AF(주)	보증채무	30,180,000
9	P(주)	대출채무	92,075,000
10	위 표의 순번 11 내지 25	15,188,830,521	
합계액	17,351,498,935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F이 피고 A으로부터 기존에 연체된 운송비 및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A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F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등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매매예약 체결 전까지 F과 피고 A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상 F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AH 및 AB와 관련된 것만으로도 335,934,500원(= AH 관련 100,683,000원 + AB 관련 235,251,500원)을 넘어서는 반면, 위 매매예약 체결 후 F과 피고 A 사이의 거래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상 AI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AJ영어조합법인과 피고 A 사이의 거래대금을 포함하더라도 12,870,000원에 불과한바, 피고 A이 위 매매예약 체결 후 F과 거래를 계속하였기에 F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이 피고 A과 거래를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F의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의 체결은 F의 사업 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담보 제공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올라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과 피고 E가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3. 31. 당시 이 사건 선박 지분의 가액은 1,064,235,600원(= 감정평가액 1,182,484,000원 $\times$ 9/10)인 반면,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1,115,900,000원에,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4,711,497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지분에 설정된 4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잔존 대출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올라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은 2019. 7. 30.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R,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선박 지분의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는 점, ② R은 이 법원에 '상기 금액 육억원 중 일억은 받고 나머지 오억은 다른 물건으로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당일인 3월 31일 실제로는 F의 자형되는 E로부터 팔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오억 이천만원은 차용증을 받았음'이라 사실조회 회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 E가 2020. 3. 31. R에게 83,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 위 R의 회신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R이 F에 대해 6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 지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 지분에 설정된 4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00,000,000원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선박 지분이 부담하는 총 피담보채무액은 1,730,611,497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115,900,000원 +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711,497원 + 4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선박 지분의 가액 1,064,235,600원을 초과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박 지분에 설정된 4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잔존 대출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 지분에 설정된 1 내지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한 금액 1,130,611,497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115,900,000원 +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711,497원)만으로도 이 사건 선박 지분의 가액 1,064,235,6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F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체결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A, D, E는 F와 오랫동안 실질적인 담보 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기에 이르러서야 기존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 피고 C, B, D, E는 F의 고향친구, 형 등으로서 F와 가까운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관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범

판사차선영

판사정혁

별지

1)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AG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0원으로 확인되나, 위 부동산에 관한 종전 거래 내용과 부동산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위 부동산의 가액을 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감정평가서(갑 제21호증)에서 위 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이 소재한 영향을 감안하여 산정한 26,16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9,171,840원(= 202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680원 × 13,488m²)을 가액으로 인정한다.

3) 원고는,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주식회사 H에 대한 보증채무가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F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이상, F의 위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보증채무는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